

『법학논총』 편집위원회 운영규정

제정: 2007. 10. 5

개정: 2015. 10. 1

개정: 2018. 2. 27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가 발간하는 『법학논총』에 게재될 연구논문을 심사·평가하기 위하여 두는 편집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5.10.1.>

제2조(구성)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편집부위원장 및 4인 이상 1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15.10.1.>

② 편집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법학연구소장이 지명한다. <개정 2018.2.27.>

③ 편집부위원장은 편집위원 중에서 편집위원장이 임명한다. <개정 2015.10.1.>

④ 편집위원은 상임연구원 및 외부인사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법학연구소장이 위촉·임명한다. <개정 2015.10.1.>

⑤ 편집위원이 될 수 있는 외부인사는 법학교수 또는 법률분야 종사자로서 연구 업적과 대외적 활동이 우수한 자 이어야 한다. <개정 2015.10.1.>

⑥ 편집위원장과 편집부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<개정 2015.10.1.>

⑦ 편집위원회에는 편집 실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둘 수 있다. <개정 2015.10.1.>

제3조(업무) ① 편집위원회는 본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『법학논총』에 게재할 논문 등에 관하여 논문심사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기초로 논문게재 여부의 결정과 편집에 관한 심의 및 결정을 한다.

1. 『법학논총』의 기획·편집 및 발간
2. 투고논문의 심사 및 심사위원 선정
3. 심사결과의 수합과 게재여부의 결정
4.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처리 <개정 2015.10.1.>

② (삭제) <개정 2015.10.1.>

제4조(운영) ① 편집위원회 회의는 『법학논총』의 발간 일정에 따라 연 4회 개최한다. <개정 2015.10.1.>

② 편집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편집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를 소집한다. <개정 2015.10.1.>

③ 편집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자우편 등으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. <개정 2015.10.1.>

④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의한다. <개정 2015.10.1.>

⑤ 편집부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의 불참 또는 유고시 편집위원장의 업무를 대신한다. <개정 2015.10.1.>

제5조(명예와 비밀보장) ① 각 편집위원은 연구소를 대표하는 자로서 명예를 보장받으며, 편집위원이 수행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연구소장과 편집위원장 이외에는 누구로부터의 업무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. <개정 2015.10.1.>

② 편집위원은 학술활동에 관여한 사람들의 명예를 위하여 필요한 기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. <개정 2015.10.1.>

부칙[2007.10.5.]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10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규정) 기존의 단국대학교 『법학논총』 편집규정 중 편집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이 규정으로 대체한다.

부칙[2015.10.1.]

이 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[2018.2.27.]

이 규정은 2018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.